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에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) 중 2명(5급 1명, 6급 1명)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, 1명(4급 또는 5급 1명)은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9. 00. ~ 0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1항을 삭제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,010”을 “1,01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99”를 “1,00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970”을 “972”로 한다.

별표 6 제9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9조(한시정원) ① ~ ③ (삭제) ④ · ⑤ (생략) ⑥ · ⑦ (삭제) ⑧ (생략) ⑨ (삭제) ⑩ (생략) ⑪ <u>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.</u> ⑫ (생략)	제59조(한시정원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⑧ (현행과 같음) ⑩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⑫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10</u>	<u>1,012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999</u>	<u>1,001</u>	+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970</u>	<u>972</u>	+2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0